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65

발의연월일: 2021. 2. 17.

발 의 자:이해식·한병도·송재호

이형석 • 오기형 • 민형배

이소영 · 김민철 · 임호선

김병주 · 양기대 · 고영인

오영환 · 김영배 · 서영교

김민석 • 서영석 • 허 영

우워식 • 이성만 • 강득구

조오섭 · 김경협 의원

(23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세, 광역시세 및 도세 등 광역자치단체의 세로 구분하고 있음.

한편,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논의를 통해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재정분권 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이에 지방소비세 중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을 위해 시·군·구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는 해당 시 ·군·구세로 하도록 특례규정에 추가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815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0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3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816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2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나목 및 제4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	
호 <u>가목 및 나목</u> 에 따라 시·군	<u>가목·나목 및 제4호가목 및</u>
•구에 납입된 금액은 제8조제	<u> 나목</u>
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	
고 시・군・구세로 한다.	